전남 농어촌 벌써부터 '일손 구하기 전쟁'

구인난에 인건비 대폭 상승하며 인력난 되풀이 예고…농어민들 시름
자가격리비용 140만원 부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포기도 잇따라
정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일시 취업 허용 불구 실질적인 도움 될지는 의문

전남지역 농·어민들이 벌써부터 일손 구하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력을 제 때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면서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혀 입국하지 못한 상황이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더라도 국내 자가격리 기간 들어가는 비용을 농·어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터라 올해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숫자도 급감했다.

◇외국인은 못 부르고 내국인은 안오고=16일 법무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지역은 장흥·완도 등 6곳으로, 이들은 모두 124명(강진 6명·고흥 39명·곡성 12명·영암 6명·완도 54명·장흥 6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다.

지난해 이들 지역 농·어민들이 신청했던 299명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19 여파로 가장 큰 원인으로,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해당 농·어민들이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는 게 일선 시·군 설명이다.

지난해 9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었던 해남에서는 올해는 단 한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농민들이 없었다.

해남군이 올해 초 지역민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할 때만해도 상추·배추·고추 농가에서 51명의 계절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었다. 농민들은 그러나 외국인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도 벼농사·축산업 분야에서 이같은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자가격리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한몫을 했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면 이들의 2주간의 자가 격리 비용을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해도 적자'라는 농사를 하면서 1인당 1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

나주 동강면에서 23만 1404㎡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조영민(60)씨는 "자가격리 비용이 140만원이나 하는데 누가 쉽사리 신청을 할 수 있겠냐"며 "격리비용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조씨의 이 때문에 최소 5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아내와 아들 셋으로 해결해야할 상황이다.

조씨는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곧 닥칠 농번기철 인력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주변 고추 농가에서는 '씨를 뿌리면 뭐하냐 거둘 사람이 없는데'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수익 내기는 어려운데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인건비는 대폭 올랐다.

해남군 어업경영인회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13만원이던 인건비가 올해는 영농철을 앞두고 17만원까지 30% 가량 뛰었다.

박미광 해남군 어업경영인회장은 "인건비 상승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규모 어가는 인건비 탓에 사람을 쓰는 것 조차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초 10만원 수준이었던 농촌지역 하루 인건비는 지난해 말 13만원으로 상승했다. 농민들은 올해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인건비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농·어촌 취업을 허가키로 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동반 자격(F-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 취업(E-9) 자격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취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자격을 확대한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허가한 동거(F-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농·어촌에 취업한 외국인은 고작 243명에 불과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성암 명승 지정 해제 촉구 시위
구례 주민들, 문화재청 실사 현장서

'구례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추진위원회'(해제추진위)는 16일 오후 사성암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명승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5572명의 구례주민들의 사성암 명승 해제 진정서 제출에 따른 실사를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주민들은 ▲명승지 일대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 불가능 ▲명승지정 시 군민의견 반영 미흡 ▲지역 자원개발 제약 등을 들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해제추진위는 "명승이 오산 정상부 전체(7만 1129㎡)에 대해 지정돼 있고 지정지역 밖 500m까지 개발행위가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지리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자원을 이용할 수 없어 지역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16일 오후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 진입로에서 구례군민들이 지난해 요청한 '명승지 지정 해제 진정'에 따라 현장 실사에 나선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사성암 명승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혹 떼려다 혹 붙인' 항소
형량 되레 증가 잇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를 했다가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무안군 모 버스터미널 공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A씨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점, A씨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들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여·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10월 19일, 목포시 옥암동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B씨가 사고를 낸 전날 밤 11시 50분까지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다 7시간 이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운전할 신체·정신적 상태가 아니었고 급히 운전할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40년 분쟁' 김 양식 어업권 진도로
법원 마로해역 판결…해남 어민들 불복 항소할 듯

법원이 40년을 이어 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김 양식어장 분쟁과 관련, 진도 측 손을 들어줬다. 해남 어민들이 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해남수협과 어민들이 진도수협과 어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어장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행에 따른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권 주장, 진도에 신규어업권 면허지를 부여했으므로 마로해역 어업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이중이익 주장, 어업 실적에 따른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 주장 등 해남 측 어민들의 다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남은 각 어장에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진도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의 김 양식 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어민 간 분쟁은 무려 40년 전인 1980년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양측은 지난 2011년 법원 조정을 통해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진도측이 지난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남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자 해남지역 어민들이 양식을 계속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해 '2차 분쟁'으로 촉발됐다. 어민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오다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진도군은 "어민들이 하루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하겠다"고 한 반면, 해남 측은 "어민 생계를 담보로 한 소송인 만큼 끝까지 행정적 총력을 다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해남=박희석 기자 dia@